

#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원	시험과목 (1·2차 시험 병합실시)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3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출제범위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 선택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지방행정’을 포함합니다.

##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다. 시험문제의 출제 : 인사혁신처(시험문제 공개)

##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최초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거주지 제한 :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①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최초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 내로 되어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예시) 2007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5일까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 00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응시가능(현재 세종시 관할 행정구역이며, 36개월 이상 거주)

\*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은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지역(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일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지역(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으로 2012. 7. 1자로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된 지역임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

라. 자격제한 (적용기준 : 최초 면접시험일)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최초 면접시험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 사회복지사 자격증번호(자격증 취득예정일)를 반드시 입력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접수 : 2. 3(화) ~ 2. 5(목) <취소 : 2. 3(화) ~ 2. 12(목)>	필 기	3. 5(목)	3.14(토)	4. 9(목)
		면 접	4. 9(목)	4.22(수)	5. 7(목)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http://www.sejong.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저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원서접수센터 안내전화번호 : ☎ 070-4012-6103~6104)

- 2) 접수(취소)시간 : 응시원서 접수(취소) 기간 중 09:00 ~ 21:00

###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

###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4.5cm기준입니다.

###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인적사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록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수정·입력 가능)
- 2)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단, 토·공휴일은 취소 불가)
- 3)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4)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 제한, 자격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5)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6)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별첨 참조)하여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가.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직류)별 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 (단, 각 항에서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

## 1) 공통적용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비율

임용계급	자 격 증	가산비율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종전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2) 직렬(직류)별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직 류	자 격 증	가산비율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변호사	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함

## 3)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적용 (☞ 적용대상 :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

## 나.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위의 “1)” 항과 “2)” 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일 전일(3.13)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 바. 본 시험은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하며, 해당 시험문제는 공개합니다.
- 사.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총무과(인재개발담당, ☎ 044-300-30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